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53137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운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용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민우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박중구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A 사이에 2020.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주식회사 C에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별지 2 목록 기재 배당금 내역표 기재 배당금) 320,967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금청구권을 주식회사 C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5.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A 사이에 2020.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E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5. 27. 접수 제225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E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5.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B는 E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6. 1. 접수 제231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19.과 2017. 3.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C의 대표이사 E은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C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연대보증인
①	2016. 2. 19.	38,250,000.	45,000,000.	기업은행	2020. 10. 21.	24,976,281.	E
②	2017. 3. 3.	45,050,000.	53,000,000.	기업은행	2020. 10. 21.	30,457,732.	
	합계	83,300,000	98,000,000			55,434,013	

2) C는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98,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이후 원고와 C는 위 표 순번 ①, ②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21. 2. 10.과 2021. 2. 26.로 각각 연장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1) C는 2020. 5. 7.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A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6. 접수 제1197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C는 2020. 5.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2. 접수 제1256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1) E은 2020. 5. 7.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3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A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5. 27. 접수 제225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E은 2020. 5.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2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6. 1. 접수 제231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의 기한의 이익 상실

C는 2020. 6. 13. 원금 연체 등으로 보증부실 사유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C는 2019. 11.부터 2020. 6.까지 건강보험료 약 1,100여만 원 등 4대 보험료를 연체하고, 2020. 4. 30.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으며, F 주식회사가 2020. 4. 13. 청구금액 24,445,340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이 2020. 5. 4. 청구금액 108,000,000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바. 원고의 대위변제

C가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0. 10. 21. 기업은행에 55,434,013원을 대위변제(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하였고, 권리행사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 비용으로 988,156원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의 구상금 청구

원고는 C, E을 상대로 2020.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48862호로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56,422,1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아.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1. 6. 10.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320,967원을 배당하고, 제2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와 E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는 2019. 11.부터 2020. 6.까지 건강보험료 약 1,100여만 원 등 4대 보험료를 연체하고, 2020. 4. 30.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으며, F 주식회사가 2020. 4. 13. 청구금액 24,445,340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이 2020. 5. 4. 청구금액 108,000,000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와 E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무자력과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C는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0. 5. 초 · 중순경 C의 적극재산은 제1 부동산이 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일시경 제1 부동산 시가는 326,000,000원¹⁾ 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합계는 240,000,000원(대출원금 368,096,719원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로 산정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86,000,000원(= 326,000,000원 - 240,000,000원)이다.

② 2020. 5.~6.경 C의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 원금 368,096,719원)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등 4대 보험 관련 보험료 채무 합계 28,470,790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임금채무 17,000,000원, H에 대한 임금채무 18,697,407원,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42,000,000원 등이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와 피고 회사에 그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주장

피고 A는, C의 대표이사 E)와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가 없고, 2014. 8. E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그 대여원리금을 받지 못하다가 C의 채무 내역이나 자금 사정 등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2019. 11. 20.부터 2020. 4. 3.까지 C에 반도체, LCD 제작용 장비의 순간정전 보상장치를 공급하고 약 44,543,4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2020. 1. 2. 2,369,4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 42,174,000원에 관해서 C의 회사 운영과 사업 계속을 위해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C는 이를 통해서 타업체에 순간정전 보상장치를 판매하여 확보한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사업 계속을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특히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기초해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유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A가 2014. 8. 18.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9. 11. 20.부터 2020. 4. 3.까지 C에 반도체, LCD 제작용 장비의 순간정전 보상장치를 공급하고 2020. 1. 2. 2,369,400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42,174,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후 C가 2020. 5. 7.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A 앞으로 2020. 5. 26.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2020. 5. 29.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 앞으로 2020. 6. 2.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제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19. 11.경부터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2020. 4.~5.경부터는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으며,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 부동산이 C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피고 A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가 피고 회사에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기존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한 것으로 이로써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 것은 전혀 없는데, C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C가 2020. 5. 7. 피고 A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9. 피고 회사와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A에 대하여 320,967원을 배당하고, 피고 회사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것과 같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20. 9. 2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1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 A가 위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A는 원상회복으로 C에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320,967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C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제2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2의 가.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3, 4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와 E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과 I는 2018. 11. 21. J로부터 제2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8. 11. 21. J로부터,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015. 9. 16.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계약을 인수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이로써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E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되고, I는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E이 제2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2020. 5. 7. 피고 A 앞으로 제3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2020. 5. 29. 피고 회사 앞으로 제4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할 당시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 K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적어도 대여원금 100,000,000원을 넘는데 반하여, 제2 부동산 중 E 소유의 이 사건 지분(1/2 지분)의 가액은 97,734,000원(= 2020. 8. 31. 기준 이 사건 제2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액 195,468,000원 $\times$ 1/2)을 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2 부동산에 관한 제3, 4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E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자신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제3, 4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별지 1.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L에 있는 M건물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N]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O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95.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서울특별시 금천구 L 공장용지 361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3610분의 26.02

2. 충청북도 충주시 P 답 2,506㎡

별지 2.

배당금내역표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 피고 A

배당순위: 6번

배당이유 : 근저당권자

배당금액 : 320,967원

1) 2020. 8. 5. 기준 감정평가서(갑 제7호증의1)